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가 일정 기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3호를 개정하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나. 부칙에서 개정령 시행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규정의 실효성 확보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다만,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는 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해 제2조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한 2년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연구위원으로 임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제2조(보직범위)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 12. 삭제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u>한정한</u> 다)	13. ----- ----- ----- <u>한정한다</u>), 다만,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는 위 <u>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u> <u>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u> .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해 제2조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한 2년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연구위원으로 임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과	
연 락 처	(02) 2110 - 4210